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- 26호

「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23일

## 강릉시 의회 의장

###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특수임무유공자, 4.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4.19혁명 부상자, 4.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특수임무유공자, 4.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4.19혁명 부상자, 4.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대상자 신설(안 제9조 제1항)
-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유족에게 이전(移轉)되지 아니하는 규정 삭제(안 제9조 제2항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국, 전문위원, 전화: 640-4033, 팩스: 64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특수임무유공자

6. 4.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4.19혁명 부상자, 4.19혁명 공로자

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당의 지급대상 등)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,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(移轉)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9조(수당의 지급대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특수임무유공자</u></p> <p>6. <u>4.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4.19혁명 부상자, 4.19혁명 공로자</u></p> <p>7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